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판례동향

The Current state of Judicial precedent on Database Protection

— 「프랑스」대법원판례(1985)를 중심으로

신각철/법제처법제연구관

SHIN, KAK-CHUAL./Ministry of Legislation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법제코너

데 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의 문제제기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약칭)는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일상업무와 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지적 산물(知的產物)임에 틀림이 없고, 누구나 법적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공감(共感)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의 어려움 또는 한계성에 대하여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데이터베이스가 엄격한 의미에서 저작물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시켜 저작권법상 일반원리에 준하여 보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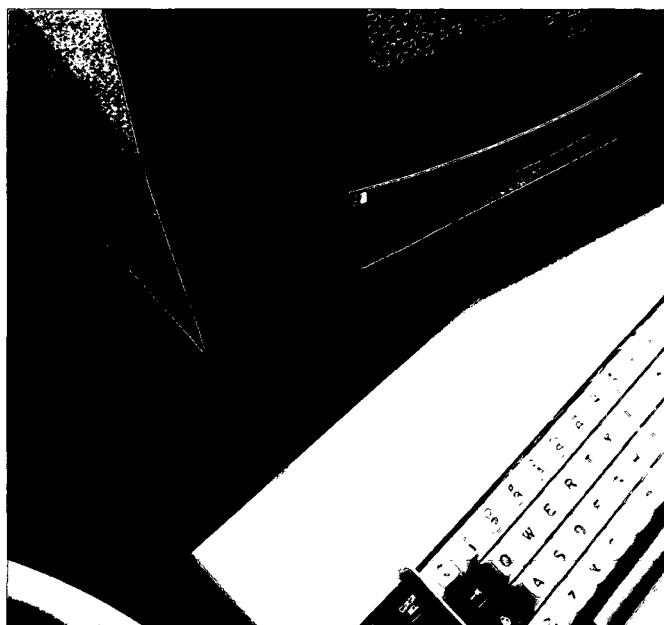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그 작성과정에서부터 일반 편집저작물과 크게 차이가 있다. ① 일반 편집 저작물은 편집방침에 따라서 자료의 수집·선정에 창작적 노력이 뒤따른다. 그러

나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정형화(定形化)된 기준에 따라 수집자의 지적노력이 필요없이 즉, 자료의 가치성에 따른 선별적 작업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망라적 수집활동이다. 따라서 편집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수집·선택에서의 창작성」이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② 수집된 정보의 분석·정리와 체계화에 대한 문제이다. 정보의 분석·정리 및 체계화 등은 데이터베이스의 법용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종래부터 표준화된 방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문헌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도서분류 십진법」에 의하여 정리하고 코드화하게 된다. 물론 정보의 분석은 지적노력이 필요하겠으나 대부분 사실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증권정보·일기예보·법령정보 등)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사상 및 감정이 개입될 수 없고 또한 개입되어

서도 아니된다. 사실 그대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편리하도록 컴

는 ①, 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수집·선정 및 체계화등에 있

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대



퓨터에 의한 체계적 검색기능을 부여 해야 된다. 즉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창작성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편집저작물이 보호가 아닌 별도로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데이터베이스

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준의 법해석으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세계주요국가의 판례의 태도는 어떠한가? 즉, 정보화사회에서 필요불가결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문제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적용·해석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

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한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프랑스의 M회사 (Microfor)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면서, FA(France Actualites)라는 「색인목록」을 출판하였다. 「FA 색인목록 데이터베이스」프랑스에서 발간하는 일간지(Le Monde)와 주간지

프랑스 :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성 인정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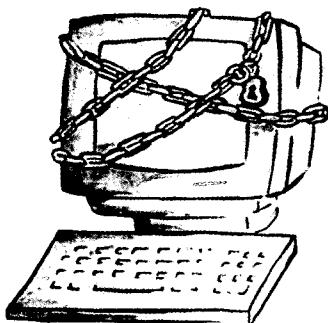
Microfor v. Le Monde

프랑스 최고법원

출판 : Christian Le Stanc, Databanks and Copyright : The Case of Microfor v. Le Monde,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Vol. 12(1985). pp. 345 – 349

(*Le Monde Diplomatique*)의 주요기사를 알파벳 순서로 키워드 배열 등 색인화하고,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原告)인 신문사(*Le Monde*, *Le Monde Diplomatique*) 측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는 피고(被告)측 M사(Microfor)에 대하여 원고(原告)의 사전 허락없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로 기사내용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 하여 지방법원·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구축자(피고 Microfor)는 프랑스 대법원에 상고하여 승소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얻어 냈다.



법리논쟁의 핵심

이 사건에서 데이터베이스법적 보호에 관한 법리논쟁(法理論爭)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특정의 신문내용 즉, 기사 등을 색인화하고 요약해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판매)함에 있어서 반드시 저작권자(신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이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신문기사목록 데이터베이스」, 「도서목록데이터베이스」, 「논문목록데이터베이스」 등 유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판결내용에 주목을 요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판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정에서 자료의 선택·수집 및 배열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쟁중의 하나이다. 데이터베이스자료의 선택·수집·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의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야 데이터베이스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판결의 주요내용

(1) 특정 저작물의 색인화, 키워드 등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유는 프랑스 저작권법 제40조에서 「저작물의 복제, 공연등 형태로 이용한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판결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정면적으로 이를 뒤엎는 판결을 하였다. 즉 피고(데이터베이스 사업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

다. 「저작물의 색인화는 저작권법 제40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저작자는 저작물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지, 저작물을 구성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상이 자유로이 전달될 수 있는 정보는 복제권의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 하였다.

위의 판결 내용을 다시 살펴본다면, 신문기사내용에 대한 색인화 작업은 그 「단어별」로 구성되었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는 전체로서 저작물에 대한 보호이며, 단어 자체에 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구축에서 특정 저작물이 색인화 작업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특정 저작물이 요약은 복제의 범위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는 저작권법 제40조의 적용범위가 「자료적인 성격을 갖는 단순한 요약의 경우 까지 확대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 하였다. 색인화의 작업에 대하여 대법원은 2가지로 분류하였다. ①은 자료적인 목적의 요약이고, ②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이다. ②의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상

세한 요약은, 원저작물이 상당 부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의 독자로 하여금 원저작물에 의존 하지 않고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요약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약은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판결 하였다.

데이터베이스구축과정에 내용의 요약은 어디까지나 ①의 자료적 성격의 요약임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3)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자료의 선택·수집 및 배열에 관하여 제작자에게 배타적 권리 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에 관하여 프랑스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 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 4조 (자료의 선택·수집)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저작물의 선택(Anthologie) 아니 수집(Collection)은 저작권법 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선택과 수집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의 선택은 선별적이라기 보다는 망라적(EXHAUSTIVE)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가 “배열” 된다는 점이다. 또한 수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정리·배열 등 작업이 필요하며, 이 가정에 창작성의 요건에 부합된다.」라고 정보의 수집·배열·정리에 대해서 창작성의 요건에 열차시간표·전화번호부 등도 보호대상인 것처럼 오늘날 편집 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 「창작성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가고 있음도 밝혔다.

(4) 또한 프랑스 대법원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창작한 저작물(데이터베이스)에 부여하는 보호란, 그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한 계약상의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결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목적은 ①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한 침해의 방지 ② 데이터베이스이용 고객에 대한 계약상의 제약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등에 있다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결론 : 데이터베이스구축에서 참고할 사항

프랑스는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를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추진하였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 대법원에서 하급

심(지방법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데이터베이스보호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린 점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하여 많은 이론적 바탕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판례에서 문헌목록·가사목록 등 데이터베이스제작과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을 다시 살펴본다면 첫째, 특정 저작물을 대상으로 색인화(KEY WORD)작업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둘째, 논문·기사등의 요약은 ①자료적 목적의 간단한 용약 ②내용상 목적의 상세한 요약이 있는바 ①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제작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선택은 선별적이 아니고 「망라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른 편집 저작물과 같이 지나치게 창작성을 요구할 수 없고, 오늘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창작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제작한 제작자에게 침해의 방지와 이용자 이용고객에 대한 계약상 제약요건 등 권리부여 차원에서 필요하다.

위의 4가지 요건은 앞으로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보호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참고자료를 살펴보았다. [DB]